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76
----------	-------

발의연월일 : 2026. 4. 8.

발 의 자 : 소병훈 · 박희승 · 허영
안태준 · 부승찬 · 김교홍
한민수 · 민형배 · 서영석
이주희 · 안호영 · 이언주
김영진 · 이개호 · 홍기원
용혜인 · 강득구 · 최혁진
전현희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여 분리조치가 되는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여 다른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증명할 수단이 부족하여 보호자의 변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리 증진에 쓰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를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보호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질문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12조에 따라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